

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14
----------	-----

2023년 7월 5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3. 5.30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3. 6. 1.
4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27.)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6.30.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)

-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14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) 제안이유

- 가.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3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(2022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당초 2,996백만원에서 3,540백만원으로 544백만원 증액하였고, '기타수입' 금액이 6백만원 순증하였음.
- 예치금 회수 : 20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*를 통한 예치금 감액(△200백만원), '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600백만원),

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106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38백만원)

* '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' 사업비 신규편성

- 기타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사업 집행잔액(6백만원)

나. 또한,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 및 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불용액 감액 등으로 '비용자성사업비' 89백만원 감액하였음.

- 비용자성 사업비 :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 (41백만원), 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비 감액(△130백만원)

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1,083백만원에서 1,722백만원으로 639백만원 증가하여 59% 변경되었음.

라.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4,056	4,606	550	13.5
세외수입	60	66	6	10
경상적세외수입	60	60	-	-
이자수입	60	60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60	60	-	-
임시적세외수입	0	6	6	순증
기타수입	0	6	6	순증
그외수입	0	6	6	순증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3,996	4,540	544	13.6
보전수입등	2,996	3,540	544	18.1
예치금회수	2,996	3,540	544	18.1
예치금회수	2,996	3,540	544	18.1
내부거래	1,000	1,000	-	-
전입금	1,000	1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000	1,000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 (B)	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 (C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차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륜 (F=E/A)
합 계	4,056	4,056	4,056	4,606	550	13.5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970	2,970	3,011	2,881	△89	△3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970	2,970	3,011	2,881	△89	△3
서울-타 시도간 스토리여 행상품 개발운영	150	150	150	150	-	-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60	360	360	360	-	-
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	1,000	1,000	1,000	-	-
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	160	160	160	30	△130	△81.2
사무관리비 (201-01)	90	90	90	25	△65	△72.2
행사운영비 (201-03)	70	70	70	5	△65	△92.8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	250	250	250	250	-	-
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	65	65	65	65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85	485	485	485	-	-
동해·울진 산불지 복구지원	500	500	500	500	-	-
시설비 (401-01)	500	497	497	497	△3	△0.6
시설부대비 (401-03)	0	3	3	3	3	순증
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	0	0	41	41	41	순증
사무관리비 (201-01)	0	0	5	5	5	순증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(308-11)	0	0	36	36	36	순증
재무활동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보전지출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여유자금 예치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행정운영경비	3	3	3	3	-	-

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5억 4,400만원)와 세외수입(600만원)을 변경하고, 각각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에 반영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**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**을 일부 감액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행정국 대외협력과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59.0%, 6억 3,9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 됨
 - 지출계획을 변경요청한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3.0%, △8,900만원을 감액변경 계획한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4,056	4,606	550	13.5
시 정 현 안 협 업 기 반 조 성	2,970	2,881	△89	△2.9
재 무 활 력 동 (행 정 국 대 외 협 력 과)	1,083	1,722	639	59.0
보 전 지 출 (대 외 협 력 계 정 국 내 협 력 계 정)	1,083	1,722	639	59.0
여 유 자 금 예 치 (국 내 협 력 계 정)	1,083	1,722	639	59.0
행 정 국 운 영 경 비 (행 정 국 대 외 협 력 과)	3	3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지출계획,
②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의 수·지 운용계획을 조정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6조(기금의 용도)

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
2.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23. 6.27.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 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공간)
 - 부위원장 : 강동길(주택공간), 김영옥(보건복지)
 - 위 원 : 송경택(행정자치), 김지향(기획경제),
이영실(환경수자원), 이종배(문화체육관광),
박철성(도시안전건설), 김영철(도시계획균형),
김용일(도시계획균형), 경기문(교통)

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29.(목) 14:00 ~ 16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30.(금) 12:00 ~ 1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3. 6.30.)

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9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3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(2022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당초 2,996백만원에서 3,540백만원으로 544백만원 증액하였고, '기타수입' 금액이 6백만원 순증하였음.
- 예치금 회수 : 20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*를 통한 예치금 감액(△200백만원), '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600백만원),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106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38백만원)
* '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' 사업비 신규편성
 - 기타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사업 집행잔액(6백만원)
- 나. 또한,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 및 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불용액 감액 등으로 '비용자성사업비' 89백만원 감액하였음.

- 비용자성 사업비 :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(41백만원),
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비 감액(△130백만원)

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1,083백만원에서 1,722백만원으로 639백만원 증가하여 59% 변경되었음.

라.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4,056	4,606	550	13.5
세외수입	60	66	6	10
경상적세외수입	60	60	-	-
이자수입	60	60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60	60	-	-
임시적세외수입	0	6	6	순증
기타수입	0	6	6	순증
그외수입	0	6	6	순증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3,996	4,540	544	13.6
보전수입등	2,996	3,540	544	18.1
예치금회수	2,996	3,540	544	18.1
예치금회수	2,996	3,540	544	18.1
내부거래	1,000	1,000	-	-
전입금	1,000	1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000	1,000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 (B)	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 (C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차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륜 (F=E/A)
합 계	4,056	4,056	4,056	4,606	550	13.5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970	2,970	3,011	2,881	△89	△3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970	2,970	3,011	2,881	△89	△3
서울-타 시도간 스토리여 행상품 개발운영	150	150	150	150	-	-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60	360	360	360	-	-
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	1,000	1,000	1,000	-	-
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	160	160	160	30	△130	△81.2
사무관리비 (201-01)	90	90	90	25	△65	△72.2
행사운영비 (201-03)	70	70	70	5	△65	△92.8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	250	250	250	250	-	-
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	65	65	65	65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85	485	485	485	-	-
동해·울진 산불지 복구지원	500	500	500	500	-	-
시설비 (401-01)	500	497	497	497	△3	△0.6
시설부대비 (401-03)	0	3	3	3	3	순증
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	0	0	41	41	41	순증
사무관리비 (201-01)	0	0	5	5	5	순증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(308-11)	0	0	36	36	36	순증
재무활동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보전지출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여유자금 예치	1,083	1,083	1,042	1,722	639	59
행정운영경비	3	3	3	3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대외협력과 대외정책팀 김근형(☎ 2133-6658)